

## 광화문 광장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 - 한번, 국토교통부장관에 세월호 불법천막 철거를 위한 직무이행명령 발동 촉구 -

서울 광화문광장은 국유재산으로서 관리청인 국토교통부가 그 관리·운영을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위임한 것이고,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 유족 등은 2014년 7월 이래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천막으로 광화문광장을 불법점거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유재산의 무단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서울시로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와 같은 국유재산의 무단사용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11개의 천막을 추가 설치하여 광화문광장 불법점거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 및 직무이행명령 발동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통하여 광화문광장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시가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천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0조에 근거하여 기한을 정한 시정명령 내지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한번은 곧이어 서울시에 대하여 불법점거 상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 별첨 : 직무이행명령촉구서

2016. 10. 1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 태 훈

